

# 시간강사 위촉 규정

□ 제정 : 1986. 03. 01

□ 개정 : 2004. 03. 01

□ 개정 : 2008. 03. 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(대학원) 시간강사의 자격기준과 위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) ① 시간강사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만 70세이하의 자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교과목의 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관련분야 권위자로서 교육·연구(실무)경력이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인자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 예·체능계 교과목 또는 교과목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①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제3조(위촉절차) ① 시간강사는 매 학기 개강 60일전에 학과장(추천교수)의 추천으로 소속대학장(주임교수)의 결재를 득한 후 교무처를 경유 부총장(대학원장)이 위촉한다.

② 담당할 과목의 주관 학부(과)가 없는 경우에는 교무처장(대학원장)이 지정하는 학과(부)의 장이 강사를 추천한다.

제4조(위촉기간) 시간강사의 위촉기간은 학기 단위로 한다.

제5조(담당과목 및 시간) 시간강사의 담당과목 수는 해당 전공분야의 3과목 이내로 하며, 동일인이 주당 9시간을 초과하여 담당할 수 없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초과하여 담당할 수 있다.

제6조(강의평가) 출강하는 모든 강사에 대해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평균 3.5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취한다. 단, 음악대학은 강의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7조(위촉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간강사로 위촉(재위촉)할 수 없다.

1. 현직 중·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자
2. 인사서류 부실 작성 또는 허위 기재로 해촉된 자
3. 종래 출강율이 2/3에 미달되는 자
4. 교수의 품위 및 능력이 결여된 자
5. 강의평가에 의한 2회 경고자

제8조(해촉) 시간강사가 제7조의 2항, 4항 또는 담당과목을 계속 강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기 도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.

제9조(강사료) 시간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제출서류) 시간강사 위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로 갈음 할 수 있다.

1. 추천서(본교 양식) 1부
2. 학력증명서(최종학위취득 또는 수료증명서) 1부
3.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(자격확인용) 1부
4. 기타 필요한 서류

제11조(의무) 시간강사는 본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, 담당과목의 강의·학사관리업무(수업계획서 작성 및 입

력, 시험 및 성적평가, 성적공시와 전산입력 등)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